

##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

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3호  
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05호  
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60호  
(문화자치 기본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문화”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.
2. “문화도시”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7>

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 성별·지역별·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5. 17>

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문화를 발전시키고, 지역적·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5. 17>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(財源)에 관한 사항

##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

4.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
5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6.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「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3>

**제6조(기초조사 등)**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의2(문화도시 조성 사업)**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
2.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
3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7]

**제7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)**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

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)**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21. 5. 17, 2021. 12. 23>

1.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1. 12. 23]

**제9조** 삭제 <2021. 12. 23>

**제10조** 삭제 <2021. 12. 23>

**제11조** 삭제 <2021. 12. 23>

**제12조** 삭제 <2021. 12. 23>

**제13조** 삭제 <2021. 12. 23>

**제14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5. 17>

1.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, 홍보, 운영 및 인력관리 등
2.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
3.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 시민 협의체 구성·운영
4.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

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5. 17>

[제목개정 2021. 5. 17]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

부칙 <2021. 5. 17 조례 제1905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본다.

부칙 <2021. 12. 23 조례 제1960호, 문화자치 기본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「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를 “사항은 「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